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7. 20 선고 2020가단136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5. 5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8. 3. 6. 접수 제6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주식회사 E는 D을 상대로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(서울중앙지방법원

2016가소5062800)를 제기하였고, ‘피고는 원고에게 19,180,000원 및 그중 17,121,971원에 대하여 2016. 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이 선고(확정)되었다(갑 제6호증).

원고는 2018. 7. 5. 위 카드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, 채권양도사실은 2018. 9. 27.경 D에게 통지되었다(갑 제3, 4호증).

D은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2017. 5. 5.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를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(갑 제5호증의 1, 2, 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약’라 한다),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(9분의 2)이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다.

그렇다면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약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이 상당한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녀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,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되므로(민법 제165조 제1항)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8. 3. 6. 접수 제6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허윤범

